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84
------------	------

2013. 07. 0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7.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전기 주택정책실장)

- 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의 시행(’12.12.31)과 함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전달관련 각종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 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3. 9 ~ 2015. 8)
- 위탁업무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전달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3년 예산 : 5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6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신규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2.12.3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시행으로 민간의 전문기관에 의한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6조~제18조

제16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13년 예산 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주택정책과-7636, 2013.5.7)

5.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이 동의안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민간부문의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13. 6.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3. 6.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촉진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에 주거복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조례 제16조 및 제18조)
- 서울시는 2012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강북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8개 기관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주거복지와 관련한 단체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상근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¹⁾,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정한 단체의 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 주거복지 지원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18조(관리 및 운영)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위탁업무 대상은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 총 예산은 5억원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별로 5천만원 내외로 10개 법인을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할 계획임.

※ 수탁기관 기준(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8조 제3항)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종합하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주거복지 지원센터 운영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민간 법인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 서비스 지역별로 여러 개소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위탁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 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84
----------	------

제출년월일 : 2013년 6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의 시행(’12.12.31)과 함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전달관련 각종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 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3. 9 ~ 2015. 8)
 - 위탁업무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전달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3년 예산 : 5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6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신규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2.12.3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시행으로 민간의 전문기관에 의한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6조~제18조

제16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13년 예산 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주택정책과-7636, 2013.5.7)